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191
----------	-------

발의연월일 : 2026. 6. 11.

발 의 자 : 윤한홍 · 김상훈 · 이종욱  
김대식 · 유용원 · 성일종  
강명구 · 엄태영 · 고동진  
권성동 · 한기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보증기금은 구상권 행사를 위해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하거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음.

한편,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이 거짓이거나, 청구금액이 과도한 경우 등으로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따라 채무자 손해에 대한 담보 제공 목적으로 신청인에게 금전 공탁 또는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서 제출을 명할 수 있음.

그런데, 법원이 금전 공탁 방식의 담보제공을 명령하는 경우 기금 본연의 업무인 벤처·혁신기업 신용보증에 사용될 재원이 공탁금으로 묶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유통 지원 여력이 크게 감소하게 됨.

이에 기술보증기금이 구상권 청구를 위해 보전처분을 신청하거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금전 공탁 대신 지급확약서 제출만으로 담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금전 공탁으로

인한 운용 비용을 최소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보증여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7조의3 신설).

##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3(보전처분을 위한 담보제공방식에 관한 특례) 기금은 제28조 제1항제7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전처분을 하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22조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 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전처분을 위한 담보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lt;신 설&gt;</u></p>	<p><u>제47조의3(보전처분을 위한 담보 제공방식에 관한 특례) 기금은 제28조제1항제7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전처분을 하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22조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u></p>